

13. 租稅減免規制法 施行令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財政經濟院公告 第1995—102號 1995. 12. 13

1. 개정취지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및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를 보완하는 등 협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각종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대상업종의 범위에 연구개발업·종합유선방송업 및 창고업 등을 추가하고 종업원수기준 및 자산총액기준외에 소유·경영의 독립기준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보완함.
- 나.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대상업종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업·물류

산업과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추가하고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업종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업 및 물류산업을 추가함.

다. 제조업·물류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가 감면되는 중소사업자의 범위와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가 감면되는 중소사업자의 범위를 업종제한없이 모든 중소사업자로 정함.

라.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투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30퍼센트가 감면되는 영세중소사업자의 범위를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자로 정함.

마. 영농조합법인이 농지소득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범위와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 부터 받는 배당소득중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각각 조합원 1인당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

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시이상 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 현재는 그 편입된 날부터 1년내에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함.

사. 20퍼센트의 양도소득세 특례세율과 세액공제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 국민주택의 범위를 1995년 10월 31일 현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미분양 사실을 확인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함.

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가계 생활자금저축의 범위를 신용카드 또는 가계수표의 결제가 가능한 계좌로서 불입한도 1천 200만원 이하의 1세대 1통장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종)를 재정경제원장관(참조: 조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엄마처럼 꼼꼼하게 아빠처럼 튼튼하게